

차량임대차계약서



(주)퍼블리 렌터카

PUBLY
RENT A CAR

대표전화:1670-1567

배차 : _____
회차 : _____

대여차명						차량번호			
대여일시	년	월	일	시	분	대여요금		기간	
반납일시	년	월	일	시	분	예약금		잔금	
반납예정	년	월	일	시	분	※반납시간 초과시 시간당 대여요금의 10%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및 제1운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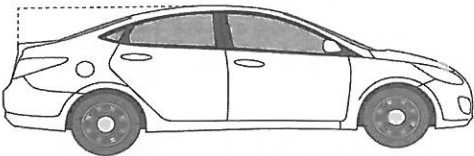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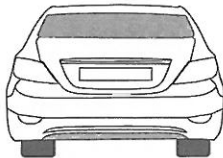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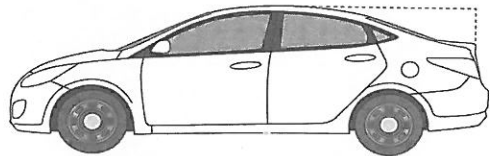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주소					

보증인 및 제2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주소					

인수인계 점검사항

차량외관사진촬영 ☐



보험회사		접수번호	
피해차명		차량번호	
정비공장		담당자	
연락처		팩스	
기타			

비상약품 ☐ 휴대폰충전기 ☐ 카시트 ☐ 우산 ☐ 먼지털이 ☐ 소화기 ☐ 공기주입기 ☐

연료점검 (fuel) E ☐ 1/2 ☐ F ☐

LPG ☐ GASOLINE ☐ DIESEL ☐ 주행가능거리 _____ km | 총 주행거리 _____ km

※ 특약사항 및 기타

면책보상보험 및 임차인 유의사항

- 운전자격 : 만(21세, 26세) 이상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기준), (운전면허취득 1년 이상)
- 임차인(연대보증인) 외 제3자가 운전할 경우 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본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보험가입 : 종합보험가입(대인, 대물, 자손) ☐ , 자차보험 가입 ☐ 미가입 ☐
- 사고처리 면책금(임차인부담금) : 대인 50만원, 대물 50만원(수입차대물 100만원), 자손 50만원, 자차 50만원 ☐ 100만원 ☐
- 사고처리 보상한도 : 대인(무한), 대물(1억원), 자손(1,500만원) 자차(500만원)
※ 사고발생 후 즉시 본사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임의로 이동한 경우, 보험 면책(자차) 적용을 제한하며 발생한 손해 전액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 휴차손해부담금 : 사고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손해배상(대여료의 70%) 대여약관 제(21조, 제22조) 의거하여 운전자 과실로 자차 사고시 수리비와 운휴보상료를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이에 가서로 제출합니다.
- 차량관리 및 정비책임 :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소모품 교체 및 자연 고장은 본사가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차량부품탈거 및 불법튜닝금지 : 차량에 부착된 기기를 임의로 탈거, 변경, 개조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차량내 흡연금지 및 위반조치 : 차량내 흡연으로 인한 악취, 손상에 대해 세차 및 손상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흡연외에도 악취 유발 물질 반입, 일반세차로 제거가 불가능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특수세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여중도반납 :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반납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대여요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 대여료연체 및 무단연장 :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대여료 연체 및 반납 지연을 할 경우 무단 점유로 간주하며, 가산요금(대여요금의 2배)을 부과한다.
연락두절이나 반납을 거부할 경우, 본사는 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을 민·형사상 법적조치(횡령 등)를 취할 수 있다.
(강제회수시 차량안에 모든 물품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교통법규위반 : 임차인은 대여기간중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차량위치정보 활용 및 관공서 신원조회 요청에 동의함.

위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하였기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임차인(제1운전자): _____ (서명) 임차인(제2운전자/보증인): _____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_____ (서명)

자동차표준 대여약관

- 본 약관은 1992.2.13일자 개정된 약관으로서 1992.2.13일 이후 계약 체결된 모든 임대차계약의 약관으로 적용하며 기존 인쇄된 계약서 뒷면의 약관은 본 약관이 대체함.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우리회사는 (이하 '회사'라 한다)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 (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하차,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2장 대여계약

제2조 (예약)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제1항의 예약은 소정의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계약 (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 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① 렌터카 운전전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 21세 미만인 자 (다만,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 경력 등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신원확인이나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 ③ 음주상태에 있을때
 - ④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사상 등을 띠고 있을때
 - ⑤ 예약당시 결정된 운전자와 인수의 운전자가 다를때
 - ⑥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제납하고 있을때
 - ⑦ 과거 대여시 제18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때
 - ⑧ 신용조회시 신용불량(주요양, 불량) 상태인 경우

제4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 성립된다.
2. 회사는 차량의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렌터카'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이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약관을 위반한 때
 -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③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1. 렌터카의 대여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약되며, 잔여대여료는 수리기간 동안 본조 제22조에 의거 영업손실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대여료가 존재할 시 반환하고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추가 영업손실금액을 부담한다.

제8조 (임차조건의 변경)

1. 대여계약의 성립후 제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대여자동차

제9조 (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 중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에 한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등)

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산)에 가입한 렌터카를 대여 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표 작성 등)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렌터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터카에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때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 한 때에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의 안전)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장애인, 외국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6개월 이상 장기간 입대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시는 일상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4장 대여요금 등

제13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에 제시한 대여요금표에 기준 한다.
2. 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요금의 수수방법)

- ① 대여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 ②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터카 반환시 정산 입금한다.

제5장 책 임

제15조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임차한 렌터카에 대하여 점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8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차량대여 기간 중에 다음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 ②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출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 ③ 렌터카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 ④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용이 아닌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의 견인에 사용하는 일
- ⑤ 불법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 ⑥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권을 시키는 일
- ⑦ 기타 임차인 및 운전자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9조 (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벌칙금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등

제20조 (사고처리)

1. 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장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즉시 사고현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당해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의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해결에 노력하고 상호 협조를 태만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처리 등)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부분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내용의 범위내에서 보상 및 보장대인, 대물, 자산의 해액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범규를 위반하거나 지체시에는 보험보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열차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할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⑥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차량손해보상에 임차인이 기입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손해보상에 기입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차량손해보상에 의한 건당 고액 부담금을 회사에 부담함으로써 자기차량손해로 부터 면책된다.
3. 제2항의 차량손해보상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용 부담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 손해금액을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차 손해부담)

임차인은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중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금액(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 요금의 80%)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권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전지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범위 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대여료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차량손해보함에 가입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 기간 내에 차량의 손, 망실이 발생한 경우 건당 고액 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단, 차량손해보함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손해액은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7장 취소·환불

제25조 (예약의 취소)

1.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①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 ②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도해약 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하여야 한다.

- 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제외
- ②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표준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8장 반환

제27조 (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에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최초 차량을 인도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터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 받았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28조 (렌터카의 반환시간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후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상상 반환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정해진 회차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장 칙

제31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기초한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때에는상대방에 대하여 년25%를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내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팸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국·영문의 해설)

국문과 영문의 약 관 해설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10장 종 약

제34조 (임차인 연령 및 운전경력)

1. 임차인의 연령 : 승용 및 소형승합(12인승 이하) 만 21세 이상, 일부차량 만 26세 이상
2. 운전경력 :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승용 및 소형승합(11인승 이하)는 운전경력 1년 이상, 12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전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제35조 (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 전면 '차량손해면책'항의 '가입'란에서명함으로써 제21조 2항의 차량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제21조 1항의 각호(1~7)에 해당하는 경우의 차량손해
2. 제22조 유차손해부담
3. 제18조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4.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한 차량손해
5.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계약사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중 발생한 차량손해
6. 임차인의 과실소홀로 인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손해

제36조 (소 수)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분쟁의 소율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신원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신원확인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 (위치정보 수집 · 이용)

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에는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대여기간이 만료되어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가 불명한 경우 회사는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렌터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